



“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”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\*\*\*\*/ 전송(02)790-8911  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백영기 [6581] 대리 고영옥 [6573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2635호

시행일자 2018. 2. 26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2018-26호(2018. 2. 23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2호, 2018.2.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[www.mohw.go.kr](http://www.mohw.go.kr)) 내 [정보] - [법령] - [훈령/예규/고시/지침]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[www.kma.org](http://www.kma.org)) 내 [상담실] - [무료보험상담실]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[주요 개정사항]

-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[별표1]" 중 신설 (별지 1~2)  
\* (주요내용) 아뉴이티100엘립타(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천식유지 치료약제) 등
-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[별표1]" 중 변경 (별지 3~4)
-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[별표1]" 중 삭제 (별지 5~7)

[시행일]

- 별지 1, 별지 3, 별지 5, 별지 6 및 별지 7 : 2018년 3월 1일
  - 별지 2 : 2018년 3월 21일
    - \* '별지1'과 '별지2'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 별로 '붙임 1'에 기재된 날
  - 별지 4 : 2019년 1월 1일
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개정고시 전문 1부, 약제급여목록표 [별표1] 개정안 각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  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